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99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나경원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5.

다. 회 부 일 : 2025. 10.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미래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인공지능미래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인공지능미래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기본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세부계획의 시행 ◦ 제15조의2에 따른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중소기업등 특별지원 및 창업의 활성화 ◦ 제2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 및 생태계 조성 지원 ◦ 인공지능활용교육 강화 ◦ 그 밖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 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공지능기본법개정안”이라 함)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와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도 2025년 3월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하고, 같은 해 9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

금을 설치하였으며, 반도체·AI·바이오·로봇 등 미래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기금을 본격 운용 중임.

그러나 인공지능 분야는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양성 등 핵심사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실제로 2026년도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은 41개 부처, 515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며,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²⁾이 있음.

또한, 초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³⁾ 개발, 그래픽 처리장치(GPU)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등은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행 예산체계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AI 인재양성·지역거점 사업 역시 중복 편성 및 실효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인공지능산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용기금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하고, 인공지능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한국형 인공지능모델 개발, 인공지능활용교육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Ⅲ, 2025.10.

3)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 이해·생성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핵심기술로, 최근 생성형 AI의 기반이 됨.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재원이 정부출연금 또는 다른 기금의 전입금으로 규정되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렵고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없는 기금 신설시 AI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AI 관련 사업을 다수 진행 중에 있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인공지능미래기금의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다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4)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

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기금의 용도 사업인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 및 생태계 조성 지원 등과의 연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또한, 기금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므로, 그 운용상 독립성 및 안정성이 저해되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다음으로 ‘신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민간투자와의 연계성이 높은 분야로, 단년도 예산체계로는 적기에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초거대언어모델 개발,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 고성능 연산장비 확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은 대규모 투자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 상황이나 기술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구조를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 관련 핵심

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기금으로 추진하여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보면, 인공지능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성과 관리가 일원화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재원을 전담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정책 집행의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u>

문의처

02)6788-5150